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절한 보안유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라 함은 본 대학교의 연구원, 교직원 등이 참여하여 본 대학교 단독 또는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로서 학술적·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기술상의 정보를 창출하는 모든 연구를 말한다.
2. 전담부서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산학연구처(산학연구지원팀)을 말한다.
3. 보안관리 담당관(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이라함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연구원, 교직원, 연구조원, 각종 계약에 의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심의위원회) ①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5. 담당관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5 조(분류기준) ①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과제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7. 연구결과물이 본 대학교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시 본 대학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③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6 조(분류 절차) ①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표 1]의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담당관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등급 분류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담당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보안등급 변경) ①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 내용이 심의위원회의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 8 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심의위원회 위원장, 담당관 및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외국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라.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유무형의 정보, 자료, 결과물에 대하여 비밀정보로 취급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한다.

마.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와 함께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표 2]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의 대외 공개 및 반출이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 본 대학교는 연구원에 대한 정기 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소관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호의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보안사고 발생시 처리)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10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은 물론 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제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

번호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 연구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 요건		
6-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업화가 가능한 기술		
6-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6-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6-4	6-1~4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7	연구결과물이 대학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시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		

① 상기 분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② 보안 등급은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2대 분류합니다.
③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지침' 및 상명대학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관제로 분류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본인은 위의 모든 사항을 신의성실하게 조사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학부/대학) (성명) (인)

[별표 2]

보 안 서 약 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상기 본인은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상명대학교 총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인)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